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
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보도를 점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도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- 충청북도 내 도시 및 도심 재개발·재건축, 도로 정비 등의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한 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. 특히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도공사 구간에서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.
- 「도로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도로점용 공사 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역할,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임.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, 보도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·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- 본 조례안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목적	제5조	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
제2조	정의	제6조	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
제3조	적용범위	제7조	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
제4조	도지사의 책무	부 칙	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는 보행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도로”, “보도”, “보행안전도우미”, “임시보행로”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
- 안 제3조는 본문 조항에 이 조례가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, 단서 조항에 일정한 공사 유형에 대해서는 조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로 두어 현실 적용 가능성을 확보함.
-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도 발주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,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 등에 대해서는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(시장·군수)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6조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,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, 교통약자 동반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임.
- 안 제7조는 현장 식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기본 복장과 장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.

다. 조례의 절차적·기술적 사항

- 조례안 예고(`25. 6. 2.~`25.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고, 관계 부서인 균형건설국 도로과와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확인됨.
- 조문 상호 간 상충되거나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 저촉되는 내용은 없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며, 비용추계서 등 입법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제공됨.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내 건설사업장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함.
- 특히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근거와 구체적 임무, 장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.
- 보행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건설사업장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조례 시행 후에는 도 발주 공사 외 민간공사에도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과 사례 축적, 현장점검 체계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